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2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9월 6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9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9. 1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가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의거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 근거조항 신설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-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(안 제5조제5항)
- 상위법령 제명변경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문구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29조, 안 제3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정진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의거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 근거조항 신설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성년이 된 구민에게 어엿한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, 초년 사회인으로서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또한 위기청소년의 보호·자립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2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9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의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 근거조항 신설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- 나.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(안 제5조제5호)
- 다.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문구 정비
(안 제1조, 제2조, 제29조, 제3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9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 8. 3. ~ 8. 23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및 「청소년보호법」(이하 “보호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”을 “「청소년 기본법」”으로, “「청소년보호법」”을 “「청소년 보호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”을 “그 밖의 청소년 육성”으로 한다.

5. 성년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

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청소년안전망) ① 구청장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에게 상담·보호·의료·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청소년안전망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청소년 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

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·운영
 3.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보호, 의료지원,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 4.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- 제29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- 제30조제1항 단서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」 제24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」 제2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5.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

<신 설>

5. 성년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
서한 발송

6. 그 밖의 청소년 육성-----
--

제6조의2(청소년안전망) ① 구청장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에게 상담·보호·의료·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청소년안전망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청소년 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

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·운영

3.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보호, 의료지원, 학업지원

제29조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30조(수탁자 선정) ① 수탁자

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」 제24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구청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.

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29조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
-----.

제30조(수탁자 선정) ①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」 제24조-----

-----.

②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